

2026년 관악이룸 실험실 지원 예산 가이드라인

- 예산 사용 및 집행 기준

[기본 집행 원칙]

- **전용계좌 사용:** 사업 선정 후 안내에 따라 지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집행해야 합니다.
- ※ 모든 지출은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(계좌이체)을 원칙으로 하며,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**사전 집행 불가:** 지원금 교부 전 집행한 금액이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항목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.
- **잔액 및 이자 반납:** 총 지원금 중 사업 기간 내 미사용 금액 및 발생 이자는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.
- **결정적 제한 항목 (지원 불가):** 자산취득비(유형자산),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교통비, 유류비, 항공권, 기념품비, 유흥비, 공공요금/통신비, 경상운영비, 숙박비, 상금, 심사비 등
-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은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재무회계규칙,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※ **필수 수행요건 :** 사업 결과물 제출 및 정산은 2026년 11월 10일 이내 완료

[지원 항목별 집행 기준]

지원 항목	사용 가능 범위	필수 첨부 증빙서류
기획비	· 프로그램 기획/운영 역할에 한해 지원금 총액의 20% 이하 편성 · 총사업비 대비 본인 지급액 과다 편성 지양	· 계약서(서명), 이력서, 강의계획서 및 출석부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이체확인증, 개인정보이용동의서 · 원천징수영수증(1인당 월 125,000원 초과 시 8.8% 원천징수)
강사비	· 외부 강사 초빙비 (사업 구성원/신청자 본인에게 강사비 지급 불가) · 1시간 이내 80,000원 / 2시간 이내 최대 120,000원(1회 최대 2시간 초과 불가) ※ 강사비가 1인당 월 125,00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(8.8%) 후 세무서 납부	※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사례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증빙 (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) ※ 기획비 지급(본인)시 종합소득세 신고이행 서약서 추가 제출
식비 / 다과비	· 실험 활동 및 소통 모임 시 구성원·참여자 사용 식·음료비 · 식비 1인 1회 8,000원 / 다과비 1인 1회 4,000원 이내 · 전체 지원금 총액의 20% 이내까지 편성 가능 (주류 불가)	·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· 회의/모임 증빙자료(회의록, 참석자 명부, 사진 등) ※ 원칙적으로 전용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 필수(개인카드 사용 불인정)
홍보비	· 홍보물 제작, 디자인, 온·오프라인 홍보비	· 견적서, 카드영수증(세금계산서), 결과물/사진
재료비 / 소모품비	· 실험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	· 카드영수증(세금계산서), 구매 제품 사진

임차료 / 대관료	· 장비·물품 임차료 및 실험 장소 공간사용료 · 공간사용료: 부가세 포함 1회 5만원, 최대 30만원 이내	· 견적서, 카드영수증(세금계산서) · 사용 사진 및 대관 확인 자료
기록 / 발간비	· 프로젝트 책자, 도록 발간, 사진·영상 기록 촬영비	· 견적서, 카드영수증(세금계산서) · 인쇄물 도안 또는 결과물/사진

-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로 프로그램 운영 구성원에게 강사비 지급 불가
- 기타 지원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- ※ 위 표 '지원항목 및 사용가능범위'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지원금 사용
- ※ 기획비는 총 사업비의 20%이내 / 식비 및 다과비는 총 사업비의 20% 이내로 편성
- ※ 식비와 다과비는 동일 행사/ 회의에서 중복 집행(동시 집행)불가함
- ※ 예산계획 내의 산출 내역은 실제금액으로, 수량·단가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, 필요시 행 추가 가능
- ※ 사업 선정시 산출 금액에 대한 견적서, 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 정산결과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첨부

· 변경 및 제재 조치 기준

- 사전 승인 의무: 사업계획(예산, 세부 내용) 변경 시 반드시 관악구문화도시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 없이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됩니다.
- 사업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건: 대표자/신청자 변경, 기획 의도 및 프로젝트 내용이 50% 초과 변경된 경우
- 지원금 삭감 조건: 사업 일수/횟수, 참여 인원 등이 사업 신청서 대비 50% 이상 축소된 경우
- 필요시 재단 내부 검토자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하여 조치할 수 있음